##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297

발의연월일: 2025. 5. 1.

발 의 자: 권칠승·전진숙·송옥주

민병덕 • 윤종군 • 전용기

허성무 • 이원택 • 송재봉

박해철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,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음.

특허권침해소송, 손해배상, 권리이전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, 고도의 법률지식,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,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 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는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,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- ④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소송대리인이 될 자격) (생	제8조(소송대리인이 될 자격) ①
략)	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리사
	는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
	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
	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
	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
	<u>수 있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③ 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소
	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의
	범위,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
	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
	로 정한다.
<u> &lt;신 설&gt;</u>	④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
	<u>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</u>
	2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
	있다.